

2026년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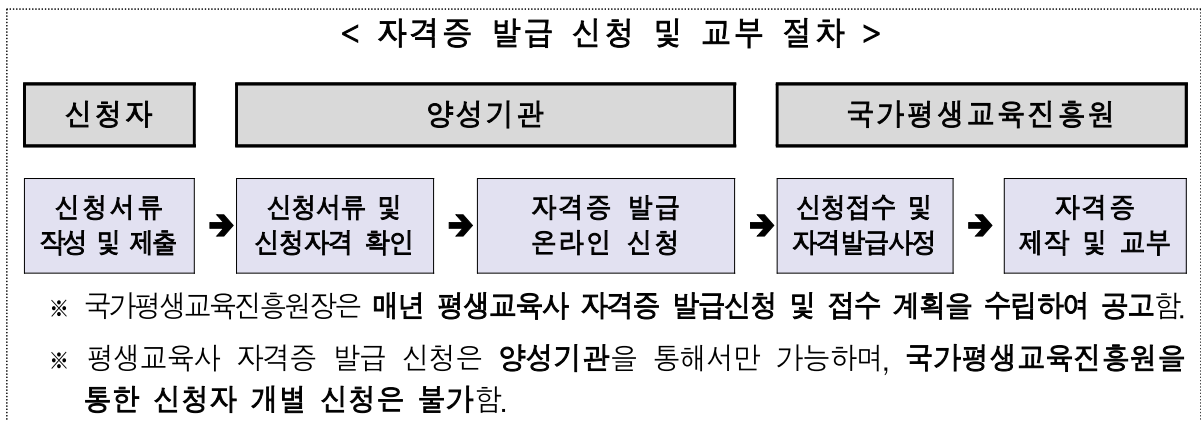
차 례

I.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1
1. 신청 개요	1
2. 유의 사항	2
II.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접수	2
III.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자격증 발급 신청	4
IV. 자격증 교부	5
V. 자격발급을 위한 유형별 신청 양식	6
VI. 자주 하는 질문	15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1 신청 개요

- (신청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한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양성기관')
- (신청 절차) 양성기관은 신청자 신청서류 접수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부서(평생교육사자격·학습이력실)에 자격발급 신청



- (신청·접수 시기) 연 4회의 자격증 교부 실시
 - 양성기관은 접수 일정을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신청자 대상으로 공지 및 안내하여야 함.

구분	접수 기간		자격증 교부
	신청자 → 양성기관	양성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차	양성기관별 상이 (별도 자체공지)	2.2.(월)~2.23.(월)	3.31.(화)
제2차		5.8.(금)~5.18.(월)	6.12.(금)
제3차		7.13.(월)~7.21.(화)	9.4.(금)
제4차		10.19.(월)~10.27.(화)	12.4.(금)

- 개인 신청자는 양성기관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양성기관은 차시별 접수 마감일까지 자격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증 신청 마감 이후 추가접수 불가
- 대학(원) 졸업예정 및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자는 제1차·제3차 접수 기간에만 신청 가능

※ 2027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27년 제1차 접수 기간에 신청 가능

② 유의 사항

- 학습자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여러 양성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업무를 수행

- ①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 ②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 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 다)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 ③ 우선순위 양성기관에서 신청접수가 어려운 경우, 후순위 기관에서도 신청 가능
 -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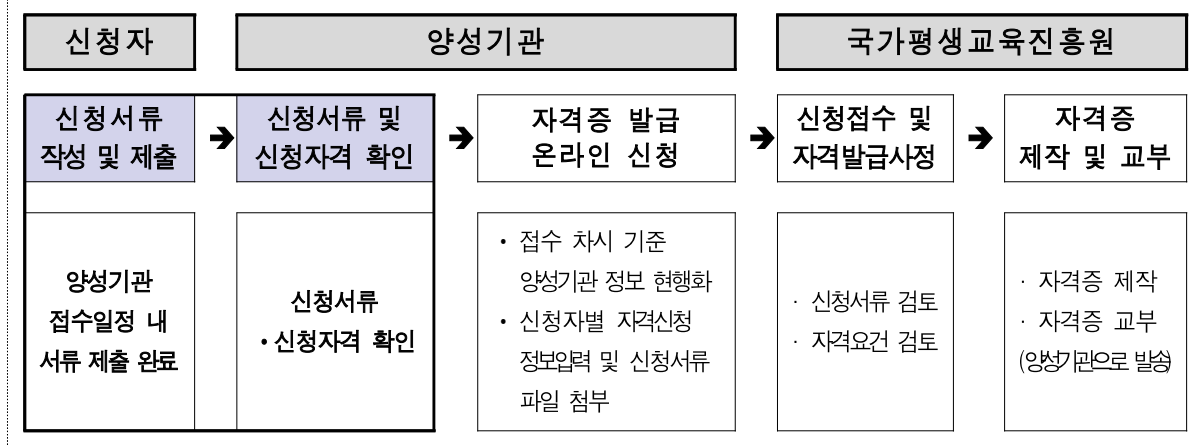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자는 학위취득자여야 함.
 - 자격증 발급 신청 이후, 졸업 사정에 의해 졸업 유예 등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자격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양성기관은 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공문을 통해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자격증 발급 신청자가 졸업 유예 등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자격실’에 전자문서로 공문 발송

II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접수

< 자격증 발급 신청 및 교부 절차 >



□ 신청서류

- 양성기관은 신청자별 자격발급 신청서류 및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서류미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자격증 발급 온라인 접수를 실시함.

구분	신청서류	참고서식									
공통 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서식 1]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수료증명서 불인정) <table><tr><th>구분</th><th>대 학(원)</th><th>학점 은행 제</th></tr><tr><td>졸업자 및 학위수여자</td><td>- 졸업 증명서 1부</td><td>학위증명서 제출 면제</td></tr><tr><td>졸업예정자 및 학위수여 예정자</td><td>- 졸업예정증명서 1부 (2급 1호 대상자 필수 제출) - 졸업 대학교 자격발급 신청대학(양성기관)이 동일한 경우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면제 (홈페이지 최종학력란에 졸업예정 및 졸업예정일 입력)</td><td>학위수여 예정증명서 1부</td></tr></table>	구분	대 학(원)	학점 은행 제	졸업자 및 학위수여자	- 졸업 증명서 1부	학위증명서 제출 면제	졸업예정자 및 학위수여 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2급 1호 대상자 필수 제출) - 졸업 대학교 자격발급 신청대학(양성기관)이 동일한 경우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면제 (홈페이지 최종학력란에 졸업예정 및 졸업예정일 입력)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1부	
	구분	대 학(원)	학점 은행 제								
	졸업자 및 학위수여자	- 졸업 증명서 1부	학위증명서 제출 면제								
	졸업예정자 및 학위수여 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2급 1호 대상자 필수 제출) - 졸업 대학교 자격발급 신청대학(양성기관)이 동일한 경우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면제 (홈페이지 최종학력란에 졸업예정 및 졸업예정일 입력)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과정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등록 완료자는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제출 면제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 이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반드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어야 함.	대학(원)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 기본증명서(일반)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개명 사실 확인 필요 시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유형) 제출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서식 2] [서식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 요건 충족 여부,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수령·확인하여야 함.	[서식 3]										
해당 자별 추가 구비 서류	● 유사과목 심의 신청자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강의계획서 각 1부	[서식 4]									
	● (구)평생교육법 적용 대상자 중 현장실습 면제자 -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경력(재직)증명서, 평생교육 업무경력 확인서 각 1부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참고									
	●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및 학력인정 확인 관련 서류 1부 -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서류 1부 (또는 행정사법에 따른 해당 외국어번역행정부의 번역문 및 번역확인증명서 각 1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 국적증명서(여권사본 등) 1부										

- 양성기관은 홈페이지(lledu.nile.or.kr)에서 양성기관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신청자별 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파일 첨부(10.27.(화) 17:00 까지 신청 가능)

< 자격증 발급 신청·교부 절차 >

신청자	양성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	자격증 발급 온라인 접수
양성기관 접수일정 내 서류 제출 완료		신청서류 · 신청자격확인		· 접수 차시 기준 양성기관 정보 현행화 · 신청자별 자격신청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파일 첨부
			→	신청접수 및 자격발급사정
				자격증 제작 및 교부
				· 신청서류 검토 · 자격요건 검토
				· 자격증 제작 · 자격증 교부 (양성기관으로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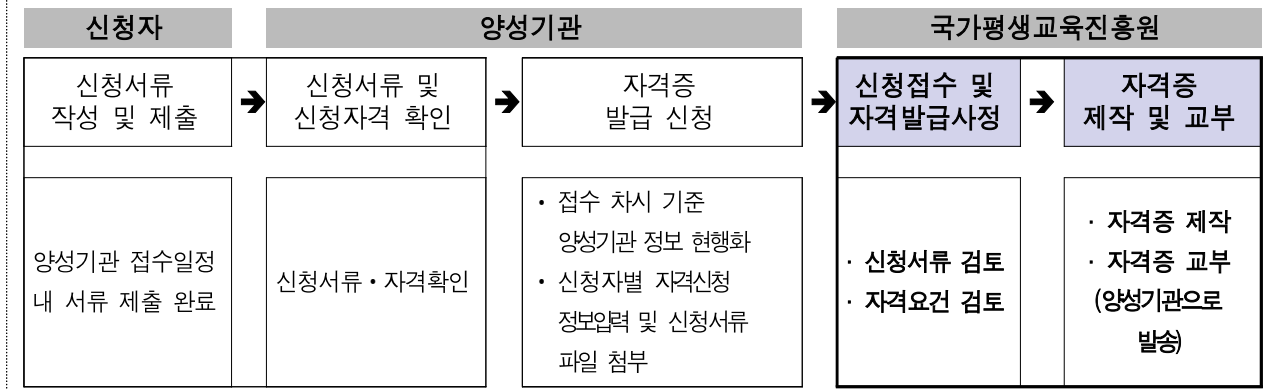
※ 2026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부터 전자공문 및 우편발송 절차 생략

□ 신청 방법

- 자격증 신청(신규발급) 배너는 신청접수 기간에만 접속 가능
- 홈페이지 양성기관 계정 로그인 후 자격증 발급 온라인 신청 실시
 - ① 양성기관 정보 및 담당자 정보 현행화(접수 차시 기준)
 - ② 개인 신청자별 자격증 발급 신청 정보 입력
 - ③ 개인 신청자별 신청서류 PDF 파일 첨부
- ※ 온라인 접수 기능은 「2026년 온라인 시스템 매뉴얼 - 1.평생교육사 자격증 온라인 신청」 안내 참조
- 신청인원이 다수일 경우, 신청자별 신청내역을 엑셀로 사전 작성한 후 신청기간 내 홈페이지 일괄 업로드하는 「엑셀 업로드 기능」 활용 가능
 - ※ 엑셀 업로드 기능은 「2026년 온라인 시스템 매뉴얼 - 2.엑셀 업로드 활용방법」 안내 참조
- 신청자별 신청 후 온라인상 '임시저장 내역'에 남아있는 대상자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
 - ※ 홈페이지 [자격증 신규발급 > 신규발급현황] 메뉴에서 신청완료 상태 확인 가능

□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절차

< 자격증 발급 신청·교부 절차 >



-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검토과정을 거쳐, 양성기관으로 자격증 일괄 교부
 - 평생교육사 자격검정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증 교부일에 각 양성기관별 자격증 신청현황을 통해 안내
-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매 차시별 자격증 발급일에 자격증 번호가 부여된 후 우편을 통해 양성기관으로 일괄 배송
 - ※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격증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자격발급 온라인 신청시 신청 차시 기준으로 기관 주소 및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현행화 필수 요망
- 교부불가 대상자의 신청서류는 자격증 교부일로부터 한달 간 다운로드 가능
 - ※ 홈페이지 양성기관 계정 로그인 후 나의 자격증 신청현황의 교부불가자 세부 신청내역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서식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0서식] <개정 2024. 5.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글명 기입 (ex. 이평생)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기입 (ex. 900101-1234567)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연락처 기입 (ex. 010-0000-0000)
	주소	주소 (ex.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05-7)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양성기관으로 일괄 배송 되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닌 양성기관을 통해 자격증을 개별적으로 수령해야 함.		
	최종학력	학교명 최종 졸업한 대학교명 기입 (제출서류와 동일) 기간 입학 ~ 졸업 최종 졸업한 대학교 입학일자와 졸업일자 기입 (ex. 입학 2015.03.01. ~ 졸업 2019.02.25.)	학위등록번호 취득한 학위번호 기재 (ex. 00 대학교 2002(학)0000)	
신청 내용	자격등급 및 요건	평생교육사 급 제 호 자격요건에 맞는 등급 및 호수 기입 (ex. 2급 제2호)		
	이수과목 및 경력	뒤쪽과 같음		

「평생교육법」 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날짜 반드시 기입)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명 기입 후 자필서명 혹은 도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최종학력 증명서 1부 2. 이수기관 성적증명서(별표 1의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말합니다) 1부 3. 경력증명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4.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부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6. 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자격증 작성	→	발급대장 기재	→	교부(우편 교부 등)
신청인		신청인(이수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수과목 및 경력

이수기관명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이수기관명 기입(복수 기재 가능)		
이수과목				
구분	과목	이수기관명	학점	성적
필수 과목	평생교육론	00대학교	3	95
	평생교육방법론	00대학교	3	85
	평생교육경영론	00대학교	3	90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00대학교	3	91
	평생교육실습	00대학교	3	100
	소 계		15	
	선택 과목	여성교육론	00대학교	3
성인학습 및 상담		00대학교 평생교육원	3	88
교수설계		00대학교	3	85
인적자원개발론		00대학교 평생교육원	3	98
직업·진로설계		00대학교 평생교육원	3	97
소계		15		
합계			30	92.9

경력

(구)평생교육법 적용 대상자로 평생교육 현장실습 면제자만 평생교육 관련 업무경력 기입

기관명	부서명	근무기간	근무월수	비고
00평생교육원	00팀	2021.1.1. ~ 2022.1.1	12개월	
		~		
		~		
		~		
		~		

(개정 평생교육법 적용자) 필수과목으로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평생교육 시설 또는 평생교육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실습지도자의 지도하에 4주, 160시간 이상 실시
(구)평생교육법 적용자) 평생교육실습을 별도 과목 이수 없이 개별적으로 평생교육 시설 또는 평생교육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실습지도자의 지도하에 3주, 120시간 이상 실시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 실습기관명 : ○○평생학습센터
2. 실습기간 : 2022년 7월 9일 ~ 2022년 8월 3일(4주, 총 160시간)
3. 실습지도자 :

직명	성명	담당	내용	비고
평생학습과 주무관	○○○	평생학습과 평생교육 업무 담당	평생학습축제 및 평생학습교실 운영	평생교육사 2급, 평생교육 관련 경력 (4년)

4. 실습내용 :

제 1 주	제 2 주	제 3 주	제 4 주
- 기관 및 실습내용 오리엔테이션 실시 - 공문서 작성 실습 - 00 프로그램 모의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5. 실습상황

실습생 성명	학과명	근무태도 (10%)	자질 (15%)	학습지도 능력 (50%)	연구조사 활동 (15%)	학급경영 및 사무처 리능력 (10%)	총평 (100%)	비고
○○○	평생교육 학과	10	13	45	14	9	91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00평생학습센터장

직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기관명)에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합니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최종학력(학교명, 전공, 입학 및 졸업시기, 학위등록번호), 이수기관(기관명, 과목명, 이수기간, 학점, 성적)	본인실명확인 자격증 신청 및 교부 자격취득 요건 확인, 자격증 진위 확인	<u>자격증 교부시까지</u>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평생교육법」제24조(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

제공 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u>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u>	성명,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이메일, 최종학력(학교명, 전공, 입학 및 졸업시기, 학위등록번호), 이수기관(기관명, 과목명, 이수기간, 학점, 성적),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내역 조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u>본인실명확인, 자격증 신청 및 검정, 자격증 교부, 자격증 진위 확인</u>	<u>준영구 보존</u>
개인정보 제공 근거	「평생교육법」제24조(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0조(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및 제7조 제3항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목	수집 목적	수집 근거
주민등록번호	본인실명확인, 자격검정, 자격증 교부, 자격증 진위 확인	-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대학교(○○○교육원)

※ 해당 서류는 양식의 변경 및 활용이 가능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제출이 아닌 양성기관 내 보관하도록 함

서식 4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인정 심의 신청서

학습자가 이수한 교과목이 법령상 평생교육 관련 과목명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인정 심의 신청서'와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구비하여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인정 심의를 통해 해당 과목의 유사과목 인정 여부가 최종 결정됨.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인정 심의 신청서

- 학교명 : ○○대학교
- 학과(학부)명 : 평생교육학과
- 이수과목 정보

적용법령	법정 교과목명	이수 과목명	이수 학기	
			성적증명서 기준	강의계획서 기준
개정법() / 구법(✓)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의 이해	2001년 2학기	2008년 1학기
개정법() / 구법()				
개정법() / 구법()				

※ 필요시 상기 입력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1]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개설한 교과목의 유사과목 인정을 위한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제출한 강의 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학적담당자 000 (서명 또는 인)

※ [별첨] 과목별 강의계획서 각 1부.

서식 5

평생교육 업무경력 확인서

(구)평생교육법 적용 대상자 중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3개월 이상 전담한 경력이 있는 자는 현장실습 면제가 가능함

※ (필수서류) 평생교육 업무경력 확인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등 1부

평생교육 업무경력 확인서

1.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1980. 12. 06
----	-----	------	--------------

2. 기관사항 (붙임. 평생교육기관 유형 참조)

기관명	○○평생학습관	기관유형	1군 ☒ 2군 ☐
-----	---------	------	--

3. 경력사항 (붙임.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참조)

소속부서명	평생학습과	근무기간	2022.01.01.~2022.12.31.
고용형태	통상근로자	주당 근무시간	주당 40시간
담당업무	※ 대표적인 평생교육 관련 담당업무 1개 이상 기술		

위 기간 동안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0 평생학습센터장

직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평생교육 업무경력 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기관유형]은 「평생교육 경력산정표」를 참고하여, ‘1군’ 또는 ‘2군’에 체크합니다.
2. [고용형태]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번호를 기재합니다.
3. 근무기관이 여러 기관일 경우, 각 기관별 1매씩 개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직군	고용형태	
공무원	①	(특수)경력직공무원(통상적인 근로시간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②	근무시간 단축 임용 공무원(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	③	통상근로자(통상적인 근무시간 범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④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교강사	⑤	전임교강사(기관에 채용되어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강사)
	⑥	시간제강사(전임이 아닌 형태로, 매주 정하여진 시간에만 강의를 하고, 일정액의 급료를 받는 교강사)

4. [1주일 근무시간 수]는 고용형태가 ①, ③, ⑤인 경우에는 40시간으로 기재하고, ②, ④, ⑥인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합니다.
5. 동일기관에서 소속부서가 여러 곳일 경우에는 [3. 경력사항]의 표를 추가하여 활용합니다.
6. 평생교육사의 영역별 담당 업무(예시)

영역	업무내용	영역	업무내용
조사·분석	- 학습자 특성 및 요구조사·분석 - 평생학습 참여율 조사 - 평생학습 자원 조사·분석 - 평생학습권역 매핑 - 평생학습 SWOT 분석 - 평생학습 프로그램 조사·분석 - 평생학습 통계 데이터 분석 - 평생학습자원 및 정보 DB 구축	교수 학습	- 학습자 학습동기화 촉진 - 강의 원고 및 교안 작성 - 단위 프로그램 강의 - 평생교육사업 설명회 및 교육 -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교육 - 평생교육사 실습지도 - 평생교육 자료 및 매체 개발 - 평생교육사 학습역량 개발
사업 기획	- 평생학습 비전과 전략 수립 - 평생학습 신규사업 기획 및 추진 - 평생학습 중·장기/연간계획 수립 - 평생학습 단위사업계획 수립 - 평생학습 축제 및 행사 기획 - 평생학습 성과지표 창출 및 관리	변화촉진 및 네트워킹	- 평생학습 참여 촉진 - 학습동아리 발굴 및 지원 -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 촉진 - 평생교육단체와의 네트워크 - 사업 파트너십 활성화 - 평생학습 공동체 및 문화조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 프로그램 개발 및 내용 선정 - 프로그램 매체 및 자료 개발 - 프로그램 실행 계획 및 매뉴얼 제작 - 프로그램 홍보 및 브랜드화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연계 - 학습자 관리 및 지원 - 강사 관리 및 지원 -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학습 결과 관리	상담 컨설팅	- 평생학습 상담실 운영 - 학습장애 및 수준 진단·처방 - 평생학습 상담사례 정리 및 분석 - 생애주기별 커리어 설계 및 상담 - 평생학습 ON/OFF라인 정보제공 - 학습자 사후관리 및 추수지도 -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평생학습 자문 및 컨설팅

※ (대학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하단에 등급별 백분위 점수 구간(기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각 등급별 기준의 가장 낮은 백분위 점수를 적용하여 자격증 신청서에 기재

* (예시) A+ : 95~100점인 경우 95점, A0 : 90~94점인 경우 90점으로 적용

※ (대학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하단에 등급별 백분위 점수 구간(기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대학 홈페이지 등에서 점수 구간 기준표 출력하거나 등급별 점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각 대학(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수 산정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 하시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성적증명서에 과목별 백분위 환산점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성(제출)하지 않습니다.

성 명 :

학교명 :

☐ 백분위를 환산 점수 사용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4.5			3.3			2.1			0.9	
	4.4			3.2			2.0			0.8	
	4.3			3.1			1.9			0.7	
	4.2			3.0			1.8			0.6	
	4.1			2.9			1.7			0.5	
	4.0			2.8			1.6			0.4	
	3.9			2.7			1.5			0.3	
	3.8			2.6			1.4			0.2	
	3.7			2.5			1.3			0.1	
	3.6			2.4			1.2			0.0	
	3.5			2.3			1.1				
	3.4			2.2			1.0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적 산출시 부여한 원점수 사용

과목명	평점	원점수

과목명	평점	원점수

위 대상자가 본교(기관)에서 이수한 과목과 취득 성적(점수)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 학과(부서)장 (인)

○ [예시] 점수 환산 기준표(만점 4.5인 경우)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A+	4.5	99	B+	3.3	87	C0	2.1	75	D0	0.9	63
A+	4.4	98	B+	3.2	86	C0	2.0	74	D-	0.8	62
A+	4.3	97	B0	3.1	85	C0	1.9	73	D-	0.7	61
A0	4.2	96	B0	3.0	84	C-	1.8	72	D-	0.6	60
A0	4.1	95	B0	2.9	83	C-	1.7	71	D-	0.5	59
A0	4.0	94	B-	2.8	82	C-	1.6	70	D-	0.4	58
A0	3.9	93	B-	2.7	81	C-	1.5	69	D-	0.3	57
A-	3.8	92	B-	2.6	80	D+	1.4	68	D-	0.2	56
A-	3.7	91	B-	2.5	79	D+	1.3	67	D-	0.1	55
A-	3.6	90	C+	2.4	78	D+	1.2	66	F	0.0	54
A-	3.5	89	C+	2.3	77	D0	1.1	65			
B+	3.4	88	C+	2.2	76	D0	1.0	64			

○ [예시] 점수 환산 기준표(만점 4.3인 경우)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A+	4.3	99	B+	3.2	88	C+	2.1	77	D0	1.0	66
A+	4.2	98	B+	3.1	87	C0	2.0	76	D0	0.9	65
A+	4.1	97	B0	3.0	86	C0	1.9	75	D0	0.8	64
A0	4.0	96	B0	2.9	85	C0	1.8	74	D-	0.7	63
A0	3.9	95	B0	2.8	84	C-	1.7	73	D-	0.6	62
A0	3.8	94	B-	2.7	83	C-	1.6	72	D-	0.5	61
A-	3.7	93	B-	2.6	82	C-	1.5	71	D-	0.4	60
A-	3.6	92	B-	2.5	81	C-	1.4	70	D-	0.3	59
A-	3.5	91	B-	2.4	80	D+	1.3	69	D-	0.2	58
A-	3.4	90	C+	2.3	79	D+	1.2	68	D-	0.1	57
B+	3.3	89	C+	2.2	78	D+	1.1	67	F	0.0	56

1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

Q1 :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학습자 개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기관단위로만 신청 가능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개인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양성기관(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자격증 신청서류를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Q2 :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여러 양성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자격증 신청은 어디로 해야 되나요?

A2 : 여러 기관에서 과목을 이수한 경우, 개인 신청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양성기관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양성기관 우선순위(권장)**

- ①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 ②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 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 다)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 ③ 우선순위 양성기관에서 신청접수가 어려운 경우, 후순위 기관에서도 신청 가능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Q3 : 자격증 발급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A3 :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기간은 연 4회이며,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ledu.nile.or.kr)에 공고됩니다. 신청자가 양성기관으로 자격증 신청하는 기간은 양성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각 양성기관별 자체 공지를 통해 접수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서류를 사전 제출하도록 합니다. 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불가합니다.

Q4 : 대학(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예정자도 자격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 대학(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예정자는 제1차, 제3차 접수기간에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자격증 교부일 이전 까지 학위 취득되어야 하며, 학위 취득 시기가 아닌 제2차, 제4차 접수기간에는 예정자의 자격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Q5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학습과목(또는 시간제등록 운영 교과목)의 **학점인정 신청과 동시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도 가능한가요?**

A5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자격증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자격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과목도 **학점은행제 상 학점등록**을 해야 하나요?

A6 :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과목도 **반드시 학점은행제 상 학점등록**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 성적증명서를 구비하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양성기관]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점

Q1 : 기본증명서 유형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A1 : 자격증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로 모든 유형의 기본증명서 제출 가능하나 **‘일반’유형** 제출하도록 권장합니다. 단,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특정-개명·성본변경)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증명하고자 발급받는 문서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무료 발급 가능함

Q2 : 대학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 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급의 백분위 점수 환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 대학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하단에 등급별 백분위 점수구간(기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각 등급별 기준의 **가장 낮은 백분위 점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 (예시) A+ : 95~100점인 경우 95점, A0 : 90~94점인 경우 90점으로 적용

Q3 : 대학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에 등급별 점수구간(기준)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등급의 백분위 점수 환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 대학에서 **등급별 점수 확인서 또는 등급별 점수구간(기준)에 대한 학칙**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서식6] 참조

3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Q1 : 개인 신청자의 자격검정 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 : 평생교육사 자격검정 결과는 매 차시별 자격증 교부일에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ledu.nile.or.kr)의 자격증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2 :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2 : 매 차시별 자격증 발급일에 발급된 자격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양성기관으로 우편발송을 통해 교부됩니다. 신청자 개별 수령 방법은 자격증 발급신청을 진행한 양성기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